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9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용우·이원택·박홍배

전진숙 · 정혜경 · 김태선

박용갑 • 김우영 • 이학영

임미애 · 천하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동물원·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악어쇼, 라쿤·미어캣을 제재없이 만지거나, 왈라비·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현황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 게"를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	
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	
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생물다양성 보전 현황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제8조(허가 등) ①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	153	존(-	금ス	रो ट	행우	뷔)	1)	동	물	원	또	는
	수፭	주관	}을	-	운	영	하	느	7	자 5	라	동	물
	원	또	는	ś	수	주.	란°	네 /	서	ī	-무	하	는
	자는	<u>-</u>	정기	당	한	入	유	-	없	(٥	보	유	동
	물이	引 ア		다	음)	각	-	ਨੂੰ 5	의	행	위	를
	하ㅇ	卢스	는	- (⇒իւ	-	된	디					

- 1. ~ 3. (생략)
- 4. <u>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u> 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 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 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 게 하게 하는 행위

② (생략)

제15조(금지행위) ①
<u>.</u>
1. ~ 3. (현행과 같음)
4. 보유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런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② (현행과 같음)